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안 제4조제4호)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11의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공공차관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4. ~ 8.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
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를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로,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14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호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제86조의4 · 제87조 · 제87조의2 · 제87조의5 · 제88조의2 · 제88조의4 · 제88조의5 · 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 ----- 제86조의3 · 제86조의4 · 제87조 · 제88조의2 · 제88조의4 · 제88조의5 · 제91조의14----- -----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91조의29에 따른 저축 등----- -----
4의2. ~ 11. (생 략)	4의2.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제100조 ·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제140조 ----- -----
11의3. ~ 12. (생 략)	11의3. ~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2